

의안번호	2218195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 계 번호	26B188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신설> 1.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2.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 3.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표준 시공 기준 및 단가를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원액 4.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 5.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수선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방안 6. 보장기관이 보유한 수선유지비 관련 정보와 연계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및 수선유지급여 시스템의 활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5항)<신설>	의무규정
2	안 제8조의2 신설 (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의2 신설 (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2. 상세 사유

-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수급자의 가구규모 · 소득인정액 · 수선유지비 소요액 ·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 수선 종류별 표준 시공기준과 단가를 고려한 지원액,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제4항),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제5항)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보장기관별 재정지원의 기준 및 규모,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 수선 종류별 지원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매년 수립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며,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인 “모든 수급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행 수선주기와 주택 노후도 기준에 따라 수선대상으로 판정된 가구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가가구 수급자 전체에 대한 실제 수선을 보장하려는 것인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개정안은 수선유지비를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시공품질 기준의 결정에 따라 수선의 범위, 시공방식 등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등 달라질 수 있어 수선유지비 지급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별 수선의 종류별 최소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최소 시공품질의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경우 수선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공정의 추가, 공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자재비, 노무비, 공사관리비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품질과 적용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